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16호 2025. 4. 28.(월)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5호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7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10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12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6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18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21

선	기관의장		
람			제1916호 2025. 4. 28.(월)

차 례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24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7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2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46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7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규 칙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916호 2025. 4. 2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74호선) 공사완료 공고 ——— 5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72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람공고 ——— 5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6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7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1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84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부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서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7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89(청라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8, 5층(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8, 5층(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5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지원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돌봄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위기아동에게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및 활용 가능한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3. 위기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아동 돌봄 사업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보호자,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16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25. 4. 28.(월)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서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2.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
4.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서구 내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녹지지역 내
-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 2.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91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인cheon광역시 서구구보 2025. 4. 28.(월)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4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의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3.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9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등록제한 및 부관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관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7.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구”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공간	청년센터 서구1939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94번길 19, 6층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청년센터 서구1939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청년센터 서구1939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행사 참여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내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내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배려주차 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 (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1,0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6,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50% 감액대상 1.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 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를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장에게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5.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1,000원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5-21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4.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4-2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7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5-21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아른 언뫼)	
2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동 34-1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197번길 15-23 (가평동)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00-8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4로 90 (원당동)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북을 잇는 네번째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6-14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82번길 12-16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9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4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243호(2024.12.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명: 인천검단(3-2공구) 지구의 도로(원당대로820번길)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74호선)
- 명칭: 인천검단(3-2공구) 지구의 도로(원당대로820번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74	17	집산 도로	545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호 (1999.6.23)	
금회 시행	중로	2	174	17	집산 도로	140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도로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호 (1999.6.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층(논현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4. 30.

6. 준공일

- 2025. 4.11.(공사완료보고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972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람공고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4. 28. ~ 2025. 5. 12.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상가동 204호)
3.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1번지 외 15필지
 - (3) 구역면적: 3,616.2㎡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119명

(6) 사업시행자: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유은)

(7) 변경내용: 조합정관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의 사용범위와 사용절차 등을 개정 및 신설하여 사용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범위(안 제4조)
- 나. 사용절차(안 제5조)
- 다. 사용승인 취소(안 제7조)

3. 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 소: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전화번호: 032-560-4902 (FAX: 032-560-2710)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서구 회의실 사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사용범위 및 사용절차 등을 개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범위(안 제4조)
- 나. 사용절차(안 제5조)
- 다. 사용승인 취소(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대회의실, 대상황실, 제2청사 회의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사용계획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부서) 회의실 관리부서는 총무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실 사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회의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의 경우
2. 구의 업무를 단체 등에서 대행하는 행사의 경우
3. 구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 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 전” 으로, “총무과장” 을 “관리부서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단체 등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제4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 을 “관리부서의 장” 으로,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한다” 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회의실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4. 사용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제9조제2호 중 “총무과장” 을 “관리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 을 “관리부서의 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회의실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메일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대상황실 <input type="checkbox"/> 제2청사 회의실				
사용목적				참석인원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총 시간 사용)				
사용설비	기본설비				
	부대설비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뒷면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승인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사용장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제6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상황실을 말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대회의실, 대상황실, 제2청사 회의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련부서”란 사용계획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를 말한다.
<p>제3조(주관) 회의실은 총무과장이 주관 운영한다.</p>	<p>제3조(관리부서) 회의실 관리부서는 총무과(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p>
<p>제4조(사용제한) ① 회의실 사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 한다.</p> <p>② 민간단체 등 외부 기관이라도 공공 목적의 회의·행사 등의 경우에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p>	<p>제4조(사용범위) ① 회의실 사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정한다.</p> <p>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단체 등에 회의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p> <p>1.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p>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제5조(사용절차)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국·과·직속기관·출장소·동 주민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외부 기관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시책 관련 행사의 경우

2. 구의 업무를 단체 등에서 대행하는 행사의 경우

3. 구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절차) ① ----- 사용하고자 하는 국·단 및 실·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용일로부터 5일 전----- 관리부서의 장-----.

② 민간단체 등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제

제6조(사용승인 결정 통지) 제5조에 따른 회의실 사용 신청을 접수한 총무과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한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긴급한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 (생략)

<신설>

4. (생략)

제9조(준수사항) 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자는 회의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 총무과장의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3. ~ 5. (생략)

4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결정 통지) -----
----- 관리부서의 장-----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회의실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4. 사용 승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준수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부서의 장-----.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취소 통보) 사용자가 회의
 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무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취소 통보) -----

 ----- 관리부
서의 장-----.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실 사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5871, 팩스 032-560-274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이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회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7. 16.>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 1. 2., 2013. 12. 11.>

-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들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들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은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5871, 팩스 032-560-274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사항은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②시·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7. 16.>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2. 시·군·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 1. 2., 2013. 12. 11.>

-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